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9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맹성규·박희승·박균택

김현정 • 이훈기 • 임오경

박홍배 · 강유정 · 김윤덕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편성될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이 세세히 심의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 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심사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사·조정하는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 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 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에 관해 재정 총량심사를 하고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가 정부안건과 함께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함(안 제83조의3 신설).
- 라.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되 지출한

도를 초과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조정하도록 함(안 제84 조제2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868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1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감사원"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예산결산위원회

-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 나. 세입세출결산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심사
- 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
- 라.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

제38조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은 타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 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9조의2제3항 중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예산결산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로 한다.

제57조제9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을 "예산결산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제83조의2의 제목 중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법률안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를 "예산결산위원회와의"로, "한다"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정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한도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3조의3(재정총량심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다음연도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및 기금별 지출한도에 대해 보고받은 뒤,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한다.
 - ② 국회의장은 예산결산위원회가 보고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재정 총량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 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 ③ 정부로 이송된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

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 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심사 결과" 를 "심사 결과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 산의 심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를 "예산결산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 의 제4항) 전단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예산결산위원회의"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을 "예산결산위원회는"으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를 "결과가 재정총량심사에서 설정한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고 려하여 종합하여야 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 하지 않은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심사 설정 한도 내로 조정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 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준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한

다.

제84조의3 본문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을 "예산결산위원회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총량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6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및 제51조의2제2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 ③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

④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제사법위원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 다.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항 하고 감사원-----라. ~ 아.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 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 는 사항 하고 기획재정부----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예산결산위원회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의 심사 나. 세입세출결산 ·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심사 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 한 사항

② (생략)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 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 명으로 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⑤ (생략)

<신 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라.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
<u>ૻૼ</u>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u>다만, 예산결산위원회</u>
의 위원은 타 상임위원을 겸임
할 수 없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u><삭 제></u>

둔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 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 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역	임에	관히	누여는	제41:	조제3항
부대	터 저][5항]	까지,	제48:	조제1항
				준용한	

-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 성기준) ①·② (생 략)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수 있다.
- 제57조(소위원회) ① ~ ⑧ (생략)
 - ⑨ <u>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u> 제1 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 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 제63조(연석회의) ① ~ ③ (생략)
 - ④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 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u>예산</u>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 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 어야 한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 성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위원회의
 제57조(소위원회) ① ~ ⑧ (현행 과 같음)
⑨ 예산결산위원회는
제63조(연석회의)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예산</u> <u>예산</u> <u>결산위원회</u>

제	83조	의2(예	산	관	컨	<u>법</u> 튙	불인	에
	대한	예신	<u> </u>	<u></u> -	별위	원호	기외	.의
	<u>협의</u>)	1	フ] ミ	획재.	정부	- 3	2관	인
	재정	관련	법률	문안	라 /	상당	한	규
	모의	예산	상 또	는	기급	금상	의	조
	치를	수반	하는	법	률인	<u> </u> 을	심	사
	하는	소관	위원	J회¦	는 대	미리	예	<u>산</u>
	결산	특별위	원호	와의	<u> </u>	협의-	를	거
	쳐야	<u>한다</u> .						

- ②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 (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 20일의 범위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 (관의 재정 관련 법률안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④ ~ ⑤ (생 략) <신 설>

제83조의2(예산 관련 <u>법률안의</u>
<u>심의</u>) ①
<u>예산결</u>
산위원회와의
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정
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한도
<u>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u> .
2
예산결산위원회
<u>게 단연 단계 단어</u>
· 예산결산위원회
.
3
<u>예산</u>
<u> 결산위원회</u>
예산결산위원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3조의3(재정총량심사) ① 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 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 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 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 설을 듣는다.

산결산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 관으로부터 다음연도 재정규 모,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앙 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 출한도에 대해 보고받은 뒤,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 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한다.

- ② 국회의장은 예산결산위원회 가 보고한 제1항에 따른 국회 의 재정총량심사결과를 본회의 에 부의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 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 부한다.
- ③ 정부로 이송된 국회의 재정 총량심사결과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 과 함께 논의된다.

심사) ① -------상임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 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 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 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

·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83조
의3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준
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
사를 하여야 한다.
<u>③</u>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 결과는 다
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산의 심사
결과
④ 예산결산위원회의

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 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 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 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 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 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 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 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 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 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u>내용을</u>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 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u> </u>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⑥ 예산결산위원회는
결과가 재정
총량심사에서 설정한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하여야 하고, 각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u>⑦</u> (생 략)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 저 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u>예</u>

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산
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심사 설
정 한도 내로 조정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u>⑦</u>
예산결산
위원회에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
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u>예</u>
_

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산결산위원회는	